##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(고동진 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0383 발의연월일: 2025. 5. 7.

발 의 자:고동진·박덕흠·김상훈

서일준 • 박준태 • 성일종

김성원 • 박충권 • 이인선

김예지 의원(10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요건에 대한 판단 기준으로, 출생지 ·가족관계·신분·직업·경력등·재산·행위·소속단체,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을 열거하고 있음.

하지만, '행위'의 경우 그 통상의 개념이 법률상의 효과 발생의 원인이 되는 의사 활동 또는 사람이 의지를 가지고 하는 행동으로, 그 범위가 넓어 기존의 입법취지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'행위'에 대한 기준에, '관련 진술 또는 발언'을 포함하여, '그행위에 대한 진술과 발언'에 대해서도 허위사실인지 정확히 판단할 수있도록 해, 공정한 선거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것임(안 제250조).

법률 제 호

###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50조 중 "행위"를 "행위(관련 진술 또는 발언을 포함한다)"로 한다.

#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50조(허위사실공표죄) ① 당	제250조(허위사실공표죄) ①
선되거나 되게 할 目的으로 演	
説・放送・新聞・通信・雜誌・	
壁報・宣傳文書 기타의 방법으	
로 候補者(候補者가 되고자 하	
는 者를 포함한다. 이하 이 條	
에서 같다)에게 유리하도록 후	
보자,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	
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	
생지・가족관계・신분・직업・	
경력등·재산· <u>행위</u> ·소속단	<u>행위(관련 진술</u>
체,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	또는 발언을 포함한다)
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	
위의 사실[학력을 게재하는 경	
우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	
방법으로 게재하지 아니한 경	
우를 포함한다]을 公表하거나	
公表하게 한 者와 허위의 사실	
을 게재한 宣傳文書를 配布할	
目的으로 소지한 者는 5年이하	
의 懲役 또는 3千萬원이하의	
罰金에 處한다.	
② ~ ④ (생 략)	② ~ ④ (현행과 같음)